##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u>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 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장

# KONA MOBILITY

## 정보공개서

코나아이(주)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22044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2.05.24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5.22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코나모빌리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8F) 코나아이(주) 대표번호(가맹사업부와 동일) Tel: 02-3440-4413 Fax: 02-769-1670 yh.ji@konai.com www.konai.com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 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 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가맹점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당사의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당사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1998.03.11	1998.03.11	코나아이(주) 사업자등록번호 109-81-53365 법인등록번호 110111-1521700	

####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가맹본부	코나아이(주)	코나모빌리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8F)			
	조정일(대표이사) 유기현(사내이사)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특수관계인 (임원)	신수동(사내이사) 조남희(사내이사) 최한묵(사외이사) 채종진(사외이사) 신승정(기타비상무이사) 신동우(감사)	조정일	02-3440-4413	02-769-1670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코나모빌리티	택시 호출 플랫폼
상 호	코나모빌리티 00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KONA MOBILITY	서비스표 등록번호: 4020774760000 자세한 내용은 I-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표지	KONA MOBILITY	_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391,478,221	249,604,401	141,873,819	238,642,388	49,889,974	29,358,010
2023년	448,218,577	280,194,402	168,024,175	277,405,437	34,946,996	24,105,634
2024년	418,702,899	211,611,423	207,091,475	227,943,856	21,702,671	23,713,392

####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3년 동안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서비	이르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1998.03~현재	코나아이(주)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_	북경심걸과기유한공사 이사	경영지원
	조정일	-	KEB TECHNOLOGY INDIA PVT.LTD.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조성 달	-	KONA SOFTWARE LAB LIMITED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_	코나아이파트너스(주) 이사	경영지원
			코나메타버스 이사	경영지원
		2015.03~현재	코나아이(주) 사내이사	경영지원
	유기현	-	KEB TECHNOLOGY INDIA PVT.LTD. 이사	경영지원
가맹사업		-	KONA SOFTWARE LAB LIMITED 이사	경영지원
관련 임원		_	북경심걸과기유한공사 감사	감사업무
		_	아트마이닝(주) 감사	감사업무
		ı	코나아이파트너스(주) 감사	감사업무
		2021.03~현재	코나아이(주) 사내이사	경영지원
	신수동	_	KEB TECHNOLOGY INDIA PVT.LTD. 이사	경영지원
		_	북경심걸과기유한공사 이사	경영지원
		_	코나엠 사장	회사업무 총괄
		2021.03~현재	코나아이(주) 사내이사	경영지원
	조남희	I	북경심걸과기유한공사 이사	경영지원
	고급의	_	아트마이닝(주) 이사	경영지원
		_	코나아이파트너스(주) 이사	경영지원
	신동우	2020.03~현재	코나아이(주) 감사	감사업무
가맹사업	최한묵	2020.03~현재	코나아이(주) 사외이사	_
기정시합 비관련 임원	채종진	2021.03~현재	코나아이(주) 사외이사	_
	신승정	2009.03~현재	코나아이(주) 기타비상무이사	_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역원구(평)	
2024년 12월 31일	6	2	300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등록일	출원번호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KOΠA MOBILITY (상표권)	39 류		4020230034686 4020774760000	코나아()(수)	2033.09.04

<sup>\*</sup>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p>\*</sup>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Ⅱ. 가맹본부의 [코나모빌리티]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가맹점 오픈일):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코나아이(주)	코나아이	조정일	가맹사업 시작 예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8F)
코나아이(주)	코나모빌리티	조정일	가맹사업 시작 예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8F)

#### 3. [코나모빌리티]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코나모빌리티	운송	택시				

####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코나모빌리티]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시역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_	-	_	-	-	_	_	-	_
서울	_	_	_	_	_	_	_	_	_
부산	_	-	_	_	-	_	_	-	_
대구	_	-	_	_	_	_	_	-	_
인천	_	-	_	_	_	_	_	_	_
광주	-	-	_	_	_	_	_	1	_
대전		_	_	_	_	_	_	-	_
울산	_	_	_	_	_	_	_	-	_
세종	_	_		_	_	_	_	_	_

경기	_	Ī	Ī	_	1	_	1	_	_
강원	_	_	_	_	-	_	1	-	_
충북	_	1	1	_	-	_	ı	_	_
충남	-	1	1	_	1	_	ı	_	_
전북	-	ı	1	_	ı	_	I	-	_
전남	-	1	1	_	ı	_	ı	-	_
경북	_	-	_	_	-	_	_	_	_
경남	_	_	_	_	_	_	_	_	_
제주	-	-	1	_	-	_	ı	_	_

<sup>\*</sup>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예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5. 바로 전 3년간 [코나모빌리티] 가맹점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년	_	_	1	_	ı	_
2023년	-	-	-	_	-	_
2024년	-	-	_	_	-	_

<sup>\*</sup>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예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6. [코나모빌리티]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코나모빌리티]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가 직전년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미포함)

	2024년 평균 매출액							
지역	말 가맹점 수	매출액	면적 3.3 ㎡당	상한	면적 3.3 ㎡당	하한	면적 3.3 ㎡당	비고
전체	_	해당없음	_	-		_	-	_
서울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부산	_	해당없음	1	-	_	_	-	5곳 미만
대구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인천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광주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대전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울산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세종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경기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강원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충북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충남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전북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전남	_	해당없음	_	_	-	_	_	5곳 미만
경북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경남	_	해당없음	-	-	_	_	-	5곳 미만
제주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sup>\*</sup>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예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8. [코나모빌리티]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코나모빌리티]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_	_

<sup>\*</sup>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예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9. 지사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광고비	인터넷 등	연중	_	_
판촉비	_	연중	_	_

\*본 정보공개서 영업표지 및 당사가 사용한 금액은 상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가맹본부가 회계상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발생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금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	서울시 중구 을지로 1 가 101-1	02-3788-5492

####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에스크로	하나은행 계좌 있는 사업자	공동인증서 준비 → 하나 에스크로 서비스 사이트 www.hanaescrow.com 접속 → 프랜차이즈 로그인 클릭 → 프랜차이즈 전용 ID 로그인 클릭 → 가맹본부에서 부여받은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 약관 동의 → 가맹금 입금계좌번호로 예치계좌에 예치가맹금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용 시	하나은행 계좌 없는 사업자	하나은행 계좌 개설 후 위의 절차 실행				
영업창구 이용 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하나은행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받아 보관				
본인이 개설시 계좌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개설시 필요서류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⑤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u>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u>

#### KONA MOBILITY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귀하로부터 최초 가맹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부담해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예치여부	비고
가맹금	_	_	_
보증금	_	_	-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이하 설명
설비, 기기, 비품 등 기타비용	가맹본부	미예치	추정금액/이하 설명

####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_	_	_	_	-
교육비	40,000	사업개시 전	교육 미이수	교육 이수 후 단순 변심	개인기사에만 해당 *법인회사의 경우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에 따름
총계	40,000	_	-	_	_

#### 2) 보증금액

당사는 귀하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 3)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VAT포함)
교육비	4만원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차량외관 필수설비	별첨1_1. 거래 상대방 참고	60,000 ~ 100,000	영업시작 전	미설치 시	갓등, 외부데칼, 스티커 *공임비 포함
차량내부 필수설비	별첨1_1. 거래 상대방 참고	-	영업시작 전	미설치 시	필요 시 협의 후 설치 가능
총계	_	60,000 ~ 100,000	해당 없음		택시 1 대 기준

- ① 위 표의 금액은 추정한 것으로 지불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상기 지급기간 및 물품대금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총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이율 1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 ③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 ④ 위 표 항목[정보공개서 V-1-1) 내역 중 거래상대방 강제항목은 제외]은 귀하가 직접 설치/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계약체결 시 당사와 별도 협의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여객운송가맹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개설된 가맹점사업자의 사업구역으로 합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영업지역과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 기준	교육 •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법인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기준에 준함	
종업원	법인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기준에 준함	규정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상기 내역은 가맹점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가맹점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광고/판촉 동의 또는 약정서 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1. 점포환경개선 시 용지원 내역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변경 비용	별첨1_1. 거래상대방 참고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 참고하시기 바립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월간 업무지원비용	가맹본부	월 20,000원 (택시운전자 1인 기준)	지정일자	잔여계약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반환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0%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sup>\*</sup>위 표의 금액은 추정한 것으로 지불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sup>\*</sup>상기 지급기간 및 물품대금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총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이율 1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2024년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
구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_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_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당사가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직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 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로열티, 광고비,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품목을 제외하고 가맹점 운영 중에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명의인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여 귀하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자체 공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원자재, 인건비, 운영비 등 복합적인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 차액가맹금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해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가맹점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요청은 (서면, 이메일, FAX, POS, 프로그램,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10 년이 지나면 당사는 귀하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재가맹비(10년 후 신규 가맹계약서상 가맹비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는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본 정보공개서 [1-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따라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 3 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 받은 경우에는 제 3 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자가 더 이상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 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귀하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기 납부한 월 업무지원비용의 미사용한 일수만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당사에 교육비[온라인 4 만원(VAT 포함)]를 납입하고 개점 전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귀하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귀하는 "코나모빌리티"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귀하의 비용으로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사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당사가 철거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② 귀하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을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가맹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도 같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별첨1\_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개점한 가맹점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코나모빌리티]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필수로 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본 정보공개서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필수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 2)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본 정보공개서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필수로 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 3. 서비스.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서비스의 판매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서비스를 판매/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한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이미지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위하는 택시운송사업
- ② 위 ①에서 정의한 항목 외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의 내용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코나택시(KONA TAXI) 전용호출	별도 관리된 차량 및 교육받은 기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의 브랜드 택시 전용호출 서비스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서비스, 상품을 판매할	3회 위반: 구두 경고 5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
코나택시(KONA TAXI)예약/대절택시	예약/대절전용 택시서비스	수 없음	10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서비스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에 따른 물품의 판매

귀하는 당사의 허락 없이 **별첨 1\_1 또는 정보공개서 V-1-1) 품목 중 거래상대방 필수품목을** 귀하의 가맹점 외의 다른 곳(온라인 판매 포함)에 판매/유통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여객운송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가맹점희망자가 허가 받은 영업지역에서만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지역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개설된	가맹계약서 내 표시된 사업장 소재지로
가맹점사업자 사업장 내	영업지역설정 표시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9 조의 17 에 의거 가맹사업법 제 12 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9 조의 17 에 의거 가맹사업법 제 12 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u>5)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귀하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u>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9 조의 17 에 의거 가맹사업법 제 12 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6)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원·부재료는 제외)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ĪΉ	t내 온라인·오프라	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_	_	_	_

<sup>\*</sup>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예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	_

<sup>\*</sup>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예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6. 계약기간,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 ① [코나모빌리티]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입니다.
-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됩니다.

#### 2) 계약 갱신거절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 ①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V-6-2)의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집니다.
- ③ 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다만,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3.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

- 1. 제 1 조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2.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① 인/허가 취득 ② 서비스의 표준화 ③ 거래상대방에 따른 물품판매의 제한 ④ 가격결정의 제한 등 ⑤ 영업시간 및 일수의 제한 ⑥ 택시운전자의 채용 및 교육 ⑦ 광고 및 판촉 ⑧ 경업금지 ⑨ 서비스 제공의 중단 ⑩ 월간 업무지원비용 등 ⑪ 가맹점환경개선에 대한 비용 ⑫ 관계법령의 준수 ⑱ 개인정보 보호 ⑭ 보험
- 3. 제 7 조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4. 제 8 조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5. 제 9 조 당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 6. 제 14 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7. 제 18 조제 2 항 귀하의 요건 변동 시 당사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 8.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9. 귀하가 당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예: 성추행, 폭행, 욕설 등)를 할 경우
- 10. 귀하가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 11. 귀하가 가맹계약서 및 관련된 내용(예 : 특약, 별도 약정서, 합의서, 동의서 등 기타 제반 문서)을 위반한 경우
- \*귀하는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경영지원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귀하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즉시 해지 사유

-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⑥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 개월 전) → 양도인/양수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0 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교육비 지급)→ 양수인 교육→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당사와 가맹점운영권 이전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양도인의 잔존계약기간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되고 교육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사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하는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가맹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고 귀하는 교육비를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 가맹점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7-1)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

동업자, 대리인, 위임인은 교육비[온라인 4 만원(VAT 포함)]를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V-6-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귀하는 당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의 가맹점사업자로 가입하거나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V-6-1) <b>가맹계약의 기간</b> 에 따른 기간	택시 호출 플랫폼	국내 전 지역

<sup>\*</sup>다만, 귀하가 "회사"의 경우 당사의 브랜드 외 경쟁업체의 가맹점사업자로 추가 가입(1 개 브랜드만 가능)이 가능하며, 택시의 경우 1개의 브랜드만 가맹점 운영이 가능합니다.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코나모빌리티]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율	자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가맹본부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를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현장점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장 또는 차량방 문→ 청결도/차량설비 확인→ 가맹 점방문기록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완료	수시	사업운영팀
미스터리 쇼퍼	담당자가 차량 암행승차→ 매뉴얼 준수체크→ 평가표 작성→ 완료	수시	사업운영팀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광고의 목적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당사는 [코나모빌리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투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가맹점모집공	고 1	100% –		_	
	개별광고	별광고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광고	전국 <sup>브랜드:</sup> 및 브랜. 지역별 광고 광고 + 가민 모집공	드 <u>-</u> 1 생점		ALO H	<광고>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가맹점의 행사 참여 <판촉>	
판촉	전국 및 지역별판 <sup>촉</sup>	시 동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별판촉		-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sup>\*</sup>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개별적으로 광고(매스미디어 및 SNS 포함)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에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사항(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사용 이미지 등)을 당사에게 통지 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사는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기로 합니다.

#### 10.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당사로부터 귀하가 영업설비 및 집기 등에 대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받은 영업설비 및 집기 등의 장착이 완료된 날부터 해당 가맹차량의 가맹서비스 최초 운행일로부터 1년까지의 기간 이내에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12조 각 항의 행위 시귀하는 지원받은 내역(데칼/갓등, 교육비, 프로모션 지원)에 상응하는 총 금액의 2 배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6 조제 9 항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하는 해당 손해를 당사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9조를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⑤ 당사의 지급요청일에 귀하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기타 계약서 및 견적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당사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귀하는 연 이율(1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⑥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 KONA MOBILITY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당사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①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서 제 15 조 제①항 내지 제④ 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다른 계약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 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ul><li>⑧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귀하 일방의 의사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하는 당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일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li></ul>

## Ⅵ.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점 개점절차 및 비용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금액
합계	_	25일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전화, 방문, 홈페이지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14일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체결 -교육비 지급 안내	1일	이립어니.   
기사 교육실시	-가맹기사입문교육	1 일	
차량설비 설치	-차량설비 설치	1일	
가맹점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당일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사업자등록증 및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이 늦어질 시
  -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경우

####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 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의 자문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2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수령 후 7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시 • 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코나모빌리티] 가맹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상 당사는 귀하에게 가맹점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지원의 의무는 없으나, 당사는 귀하와 협의하여 비용 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대상 및 내용	고객관리,위생관리,교육훈련 회계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고객관리,위생관리,교육훈련 회계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네당 옷 네당	경영지도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기간,경영진단	(경영지도내용,기간,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절차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비용부담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비고	문의 : 사업운영팀	문의 : 사업운영팀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인센티브		고객 서비스 우수기사 시상 정책 또는 시상 프로모션 진행 시		인센티브 제공	_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코나모빌리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입문 교육	서비스필수교육, 고객응대 역량강화 등	이론,실습	운행개시 1일전	개점 전 실시
보수교육	운행 서비스 향상 교육	이론,실습	필요 시	개점 후 실시

#### \*개점 전 교육프로그램

구분	교육내용	교육방식	비고
11 H L A OL = II	코나아이 가맹택시 서비스 소개		
서비스이해	가맹택시 기능 특징 및 기능 소개		
771011 0121	고객 클레임 예방 교육		
고객응대 역량 강화	고객 호칭, 고객 갈등관리		
0귀	직무스트레스 관리		
	안전운전 스킬	온라인교육	필수(기본)교육
운행서비스	초동조치 및 방어운전		
역량강화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기타		
서비스 기술습득	앱 설치방법 및 활용법 실습		

<sup>※</sup> 가맹본부의 서비스 지침에 따라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부가세포함)	비고
입문교육 운행표준습득교육	1 일 / 4 시간	40,000 원	필수

보수교육	2~1 171	ЛHI	피ㅇ시
운행표준습득교육	2 4시원	[ 결미	글쓰기

<sup>\*</sup>다만, 사회적 상황 및 가맹본부의 지침에 따라 집체교육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와 운수종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에 근무 할 수 없습니다

#### 5. 보수교육

품질정책에 의해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계약을 맺은 당사자 소속의 지정된 운송종사자가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up>\*</sup>위 표의 내용은 가맹본부의 서비스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별첨1\_1.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별첨2. 재무제표(202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재무제표(2023~2024)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